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손홍섭 의원 외 10명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코자 함.

3.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대상(안 제2조)
- 부과기준(안 제3조)
- 과태료 부과·징수 등(안 제4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안 제6조)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6조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를 부과코자 함

○ 주요 내용은

- 과태료 부과대상(안 제2조), 부과기준(안 제3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안 제4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안 제6조) 등 8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행정사무 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 지방자치법 」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 ③ : 생략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관계공무원 또는 그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들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